

2014년 미국 농업법 작물보험과 긴급 재해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임 정 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1. 미국의 농업위험관리 체계

미국 농업부 경제조사연구소(USDA ERS)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농가는 아래에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의 농업경영상 위험(Risk in Agriculture)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¹⁾ 첫째 생산위험이다. 이것은 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기후 및 병해충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량과 품질의 불확실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다. 둘째, 가격위험이다. 이것은 농가가 생산한 최종 농작물의 시장가격 혹은 농업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농업투입재의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다. 셋째, 재정위험이다. 이것은 농가의 농업대출 관련 이자율 변동, 농업자금 접근성 변화 등 농업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무관련 상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다. 넷째, 제도위험이다. 이것은 세금, 가격 및 소득지지, 환경규제, 식품안전, 노동 및 토지구제 등 정부정책과 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농업경영상 발생 가능한 위험이다. 마지막으로 인적위험이다. 이것은 농가 구성원의 사고, 질병, 사망, 이혼, 인간관계 등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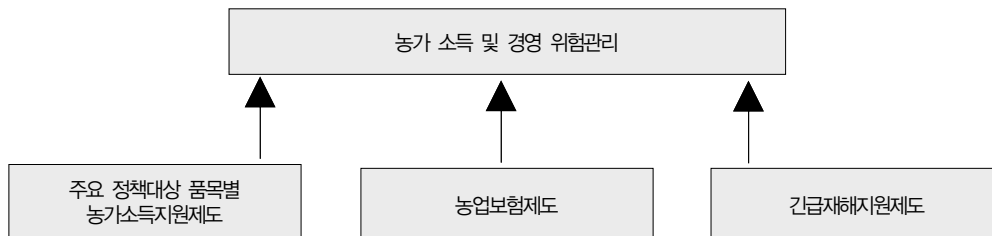
* (jeongbin@snu.ac.kr).

1) (<http://www.ers.usda.gov/topics/farm-practices-management/risk-management/risk-in-agriculture.aspx>).

농업생산자들은 위와 같은 소득 및 경영상의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여 영농다각화, 계약 구매 및 판매, 선물 및 옵션시장 활용, 효율적 재무관리, 농외소득 창출 등의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기후 및 병해충 등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급 특성상 가격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별 농업생산자가 소득 및 경영위험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나 농업위험관리(farm risk management)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농업위험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30년대 초부터 주요 품목별 농가지원제도(Commodity Program), 농업보험제도(Insurance), 그리고 긴급재해보전제도(Disaster Payment) 등 세 가지 정책 기둥을 동시에 발전시켜왔다 <그림 1 참조>. 품목별 가격보전제도는 1933년 농업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농업보험제도는 1938년, 농업재해지원제도의 경우는 보험제도와는 별도로 1973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림 1 미국의 농업위험 관리체계의 세 기둥(pillar)



특히 지난 2월 새롭게 마련된 2014년 미국 농업법(Agriculture Act of 2014)은 작물보험 및 비보험 작물에 대한 긴급재해지원제도 등 농업위험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성안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농업위험관리 정책의 핵심장치로 부상한 작물보험제도와 농업관련 긴급재해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농정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²⁾

2) 주요 정책대상 품목별 가격 및 수입보전정책은 “2014년 미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세계농업 2014년 9월호)을 참조하길 바란다.

2. 미국의 농업보험제도 운용 연왕 및 세계

미국에서 농업보험은 정부의 감독과 지원 속에서 민간보험회사가 농업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보험 업무는 농업부(USDA) 산하 기관으로 1996년 설립된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RMA)이 총괄하면서 실제적인 운영과 지원업무는 연방작물보험공사(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CIC)가 담당하고 있다. 농업보험 판매는 제도도입 초기에는 미국 농업부가 직접 하였으나 1980년부터 민간회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민간보험회사가 정부의 승인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실질적 보험판매 업무는 민간보험회사가 전적으로 대행하고 있지만 보험료와 계약조건은 연방작물보험공사(FCIC)가 결정하고, 정책의 중요 결정과 집행은 USDA의 위험관리청(RMA)이 담당한다.

미국 농업보험제도는 가뭄, 홍수, 우박, 바람, 서리, 냉해 등 기상이변이나 병해충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1938년부터 도입되었다. 1980년까지는 주로 시설피해 보전 위주였으나, 농업의 위험관리가 가장 중요한 정부 역할이란 인식 아래 1980년에 생산손실(단수감소)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본격적 농업보험시대가 시작되었고, 1994년에 가격위험을 포함하는 수입보험이 도입되었다. 특히 1994년에는 기초보험제도인 대재해보험(Catastrophic Coverage, CAT)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존 수량보장 작물보험(Yield Insurance)에 추가하여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 상품을 허용하였다.

2000년 이후 농업보험료에 대한 국가보조를 늘리고, 가축보험을 시작하였으며 또한 민간회사가 다양한 보험 상품을 쉽게 제안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이전까지 전체 식부면적의 30%수준에도 못 미치던 농업보험가입 면적이 2012년도에는 보험가능 전체 농경지의 약 90%에 해당하는 2억 9,606만 에이커가 농업보험에 가입하였고, 약 122만개의 보험계약이 이루어 졌다<표 1 참조>.

이에 농업보험금액이 2000년 344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 1,237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농업보험 지원정책 강화로 인해 농가의 보험가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전체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으로 표시되는 손해율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1.0 이하의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뭄 등 자연재해가 많았던 2012년과 2013년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여 손해율이 1.0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표 1 참조>.

표 1 미국 농업보험 정책사업 추진 동향

연도	보험가입 건수(천건)	가입면적 (백만에이커)	보험금액 (백만달러)	총보험료 (백만달러)	국가보조금 (백만달러)	지급보험금 (백만달러)	손해율 (지급보험금/ 총보험료)
2000	1,323	206	34,444	2,540	951	2,595	1.02
2005	1,191	246	44,259	3,949	2,343	2,367	0.60
2010	1,141	256	78,095	7,594	4,711	4,251	0.56
2011	1,152	266	114,128	11,958	7,454	10,836	0.91
2012	1,171	282	116,693	11,061	6,943	13,683	1.24
2013	1,223	296	123,764	11,802	7,293	12,048	1.02

자료: USDA RMA(2014), Summary of Business Report

미국의 농업보험은 크게 모든 농가의 가입을 권장하는 기초보험 성격의 대재해보험(CAT)과 농가가 보험유형과 보장수준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작물보험(Crop Insurance)이 있다. 우선 기초보험인 대재해보험(CAT)은 심각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회생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1994년 제정된 작물보험 개혁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보험은 작물수량이 평균 단수의 50%이하로 감소한 경우, 50% 이상 감소한 부분에 대해 해당품목 수확기 평균가격의 55%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는다. 이 보험 상품은 보험료를 전액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며 농가는 행정비용으로 보험 가입 1개 작물당 300달러의 수수료만을 부담한다(2014년 농업법은 창업농의 경우 CAT 비용납부 면제를 규정). 일반적으로 농업보험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농가들의 자발적인 임의 가입방식이나 2006년도부터 직접지불(DP), 가격보전직불(CCP) 등 농가소득 지원사업의 수혜조건으로 기초보험 성격인 대재해보험(CAT) 이상의 작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고, 2008년부터는 수입지원직불제(SURE)를 받기 위해서도 최소한 대재해보험(CAT) 이상의 작물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작물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 보험은 기초보험의 성격으로서 모든 농가의 가입이 권고되고 있는데, 2014년 농업법에서도 정책대상품목의 경우 가격손실보상(PLC)과 수입손실보상(ARC) 직불제 수혜대상자가 되려면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농가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작물보험은 수량보장보험(Crop Yield Insurance)과 수입보험(Crop Revenue Insurance)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작물단수 감소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수량보장보험 외에 다양한 형태의 수입보험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농가들이 수량보험보다 수입보험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단수 보

장 작물보험(Crop Yield Insurance)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상품이다. 단수 보장 작물보험에는 농가별 단수를 기준으로 하는 농가단위 작물보험(Actual Production History, APH)과 지역 평균단수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단위 작물보험(Group Risk Plan, GRP)이 있다. 수입보험은 생산량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수입보험으로는 대상 작물의 수나 형태에 따라 농장단위 수입보험(Adjusted Gross Revenue, AGR), 소규모농장 수입보험(AGR-Lite), 지역단위 수입보험(Group Revenue Insurance Policy, GRIP), 소득보장(Income Protection, IP), 그리고 수입보증(Revenue Assurance, RA)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중에서 농가가 선택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입보험이 도입되면서 수입보험의 보험가입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도에 전체 보험가입면적 중 수입보험가입면적 차지 비중이 94%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수입보험 대상작물은 전통적 수량보험 대상작물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은데, 이는 수입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생산량 및 가격자료, 농가의 재무자료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입보험 대상작물은 옥수수, 대두, 밀, 면화, 쌀, 보리, 카놀라, 해바라기 등 주로 선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농산물에 대해 운영 중이다.

한편 농업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자신이 원하는 보장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보장 수확량 및 수입은 과거 실제평균치의 55~75%수준(일부 주에서는 85% 수준까지)에서 농가가 선택할 수 있으며, 보장수준은 5%단위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농가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있다<표 2 참조>. 보험료는 대상작물, 농가특성, 영농방식, 수량 및 수입 보장수준, 예상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농가가 높은 보장수준 및 가격을 선택하면 높은 보험료를 납부한다. 정부는 농가가 민간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보험료 및 보험회사 운영비용을 보조한다. 미국은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데, 정부 보조율은 보장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보조비율은 낮아진다. 즉 높은 보장수준을 선택하는 농가는 더 많은 보험료 부담을 가지게 함으로써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발생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표 2 농업보험보장 수준에 따른 보험료 국가보조율

보장수준	55%	60%	65%	70%	75%	80%	85%
보조율	64%	64%	59%	59%	55%	48%	38%

주: 보장수준 80%와 85%는 일부 적용지역에 한함.
자료: USDA/RMA

농가보험료의 국가보조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보험료의 55~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2013년도 정부보조금은 72.9억 달러로 전체 농업보험료에서 국가보조금이 차지하는 보조비율은 61.8% 정도 수준이다. 또한 미국 정부는 민간보험회사에 행정 및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일반적으로 농업보험 관련 정부의 지원액 중 절반가량이 농가보험료 보조이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행정 및 운영비 보조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업농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과다 지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증가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2014년 농업법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합인 조정된 농업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 75만 달러 이상인 농가의 경우, 정부의 보험료 보조를 15%까지 감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회사들에 대한 행정 및 운영비 지원은 만일 농업보험 운영을 위한 정부보조가 없을 경우 농업보험료가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는 보험회사의 주장으로 인해 2014년 농업법에는 구체적인 보조감축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농업보험대상 품목은 100개 이상이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어떠한 형태든 농업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단, 대부분의 채소는 제외). 전체 농업보험대상품목이 100개 이상이지만 옥수수, 콩, 밀, 면화, 쌀 등 5대 작목이 총 보험금액과 가입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5%와 8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3. 2014년 농업법의 작물보험제도의 주요변화

작물보험은 연방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Act)에 의해 항구적으로 보장된 프로그램으로 농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작물보험제도에 의한 지원수준으로 정책집행이 보장된다. 하지만 미국은 작물보험 관련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농업법에서 일정수준의 수정과 변경을 통해 개정을 해오고 있다.

농업보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된 것은 2008년 농업법에서 종래에 없던 작물보험과 재해지원(Crop Insurance and Disaster Assistance Programs)을 별도 주제 항목(Title XII)으로 설정하여 재해와 가격하락으로부터 농가소득 및 경영을 보호하는 보험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부터다.

2008년 농업법은 기존의 농업보험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낙농수입보험 등 신규 보험 상품 도입, 농업긴급재해보상 지원을 받기 위해 작물보험의 가입 의무화와

작물보험 가입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 비보험된 작물지원 프로그램(NAP) 가입의무 등 자연재해 및 시장위험으로 인한 농가 손실에 대한 안정망을 보다 공고히 하였다.

2014년 농업법은 2008년 농업법의 작물보험(Crop Insurance)제도를 대부분 재승인(Title XI)하는 동시에 일부 새로운 작물보험을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된 재정지출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 추정에 의하면 2014년 농업법의 향후 10년간 작물보험관련 재정지출은 약 898억 달러로 영양(title IV)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2008년 농업법에 비해 2014년 농업법에서 주요 농업정책 분야 중 유일하게 가장 큰 폭의 재정지출 증액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작물보험 관련 부문으로 57억 달러 정도 증액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 농업재정지출에서 작물보험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농업법의 8.6%에 비해 9.4%로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표 3 참조>.

표 3 주요 정책 부문별 향후 10년간 예산소요 추정액 비교(2013-2014)

단위: 억 달러, %

구분	국민영양	작물보험	환경보전	품목지원	합계
2008년농업법지출액 (baseline A)	7,644 (78.6%)	841 (8.6%)	616 (6.3%)	588 (6.0%)	9,729 (100%)
2014년농업법지출액(B)	7,564 (79.0%)	898 (9.4%)	576 (6.0%)	445 (4.6%)	9,564 (100%)
증감액(B-A)	-80	57	-40	-143	-165

자료: CRS(2014), The 2014 Farm Bill: A Comparison of the Conference Agreement with the Senate -Passed(S. 954) and House-Passed(H.R. 2642) Bill.

위와 같이 2014년 농업법은 새로운 보험연계 상품의 신설, 보험대상품목의 확대 등을 통해 작물보험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연재해나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농업법은 면화소득보호계획(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 STAX)과 보완적보상옵션(Supplemental Coverage Option, SCO)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작물보험 정책의 신설과 작물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을 통해 농업 보험정책이 미국 농가의 소득 안전망의 중심축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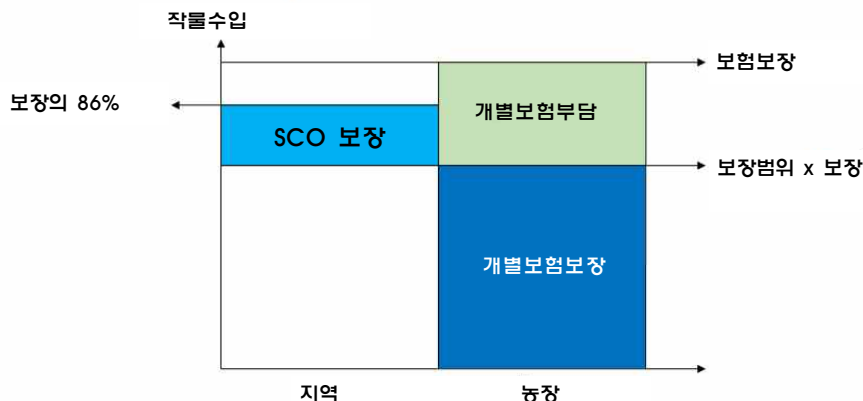
우선 2014년 농업법은 미국-브라질 면화 통상 분쟁³⁾ 대한 WTO 패소판정 결과를 반영하여 품목별농가지원(Title I) 수혜대상에서 빠진 면화의 경우, 면화소득보호계획

3) 2010년에 WTO 분쟁해결기구는 브라질이 제소한 미국 정부의 면화보조금에 대해 농가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 수혜 조건으로 과수와 채소 등 일부 작물의 재배를 제한하는 것이 생산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허용보조금이 아니라 판정하였다.

(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 STAX)으로 불리는 새로운 작물보험정책을 신설하였다. STAX는 면화가 가격손실보상(PLC)과 수입손실보상(ARC) 정책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신설된 면화에 국한된 수입보험정책이다. STAX은 기본적으로 현행 지역(county) 수입 보험 정책인 ARP(Area Revenue Insurance Policy)의 수정된 형태로서 농장수준이 아닌 지역수준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대된 지역평균수입의 10%~30% 사이에 ± 8 해당하는 경미한 손실(shallow loss)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면화생산자는 이 보험만을 단독으로 구매하거나 혹은 다른 작물보험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STAX으로 인한 보험금은 농가 자기부담금(deductible)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STAX 보험료는 농가가 선택한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높을 것이며, STAX 가입을 위한 보험료의 80%는 국가가 보조한다(농가 20%부담).

또한 2014년 농업법은 품목별농가지원(Title I)제도에서 가격손실보상(PLC)을 선택한 농가의 경우 선택적으로 보완적보상옵션(Supplemental Coverage Option, SCO)이라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 SCO는 작물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손실 발생 시에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deductible)을 보상해 주는 작물보험 연계 보험 상품이다. SCO는 기본적으로 농가가 가입한 작물보험의 기준이 단수기준인지 수입기준인지에 따라 단수기준(yield-based)과 수입기준(revenue-based) SCO로 구분되며, 지역수준의 정보를 이용하여 단수 감소와 수입 손실이 기준단수와 기준수입의 14%이상인 경우 작동된다. 따라서 PLC 선택농가가 추가로 SCO에 가입하였다면 농가는 아무리 큰 피해가 발생해도 농가는 기준단수와 수입의 14% 손실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농가가 70% 보장수준(coverage) 작물수입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실제수입이 기

그림 2 작물보험과 연계된 SCO의 작동 원리



준수입의 75%인 경우, 비록 농가는 기준수입보다 25%의 손실을 보았지만 이것은 자기부담금 이내 손실로 기존의 작물수입보험에 의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SCO에 추가로 가입하였다면 농가는 기준수입의 86%와 실제수입(기준수입의 75%)의 차이인 기준수입의 11%를 보상받아 실제 피해는 기준수입의 14%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그림 2 참조>. SCO 보험료는 농가가 기존에 가입한 작물보험의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낮을 것이며, SCO에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65%는 국가가 보조한다(농가 35% 부담).

품목별 농가지원정책인 수입손실보상(ARC)과 면화소득보호계획(STAX) 혹은 보완적 보상옵션(SCO)의 큰 차이는, ARC의 경우 지불상한(12만 5천 달러, 배우자포함 25만 달러)과 농가소득 제한요건(AGI 90만 달러)이 있는 반면에 STAX과 SCO는 일반적인 작물보험과 같이 지불 상한이나 소득제한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 농업법은 현행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보장범위(coverage level)을 전제로 USDA에게 2015년부터 농가가 이용 가능한 땅콩에 대한 수입보험 개발, 특수작물, 축산, 바이오작물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해 더 많은 보험정책개발 연구지원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전대 특수작물(specialty crop) 생산자의 식품안전 및 오염관련 문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연구, 돼지(swine)의 재앙적인 질병으로 인한 농가 손실 보상 보험 연구, 메기(catfish) 양식농가의 시장가격과 생산비용간의 마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연구, 상업적 가금류(poultry) 생산자의 경영 및 사업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연구, 가금류(poultry)의 재앙적인 질병으로 인한 농가손실 보상 보험 연구, 재생가능한 에너지 원료로서 수수 생산자에 대한 보험연구, 알팔파, 쌀, 땅콩 등에 대한 보험 확충 연구, 기후 및 기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보험에 대해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4년 농업법은 유기농작물(organic crops)에 대한 작물보험정책을 강화하였다. 유기농작물의 경우 관행작물에 비해 높은 가격과 가치를 반영하여 작물보험이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2014년 농업법은 지금까지 보전(Conservation)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혜택이 주어졌던 작물보험의 경우도 농가가 정부의 작물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침식성이 높은 경작지보호, 습지보존과 토양보존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품목별 농가지원정책인 고정직불(DP), 가격보전직불(CCP) 등의 수혜를 받기위해서 이러한 환경보전의무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준수규정의 신설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작물보험정책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비

판의 목소리를 줄이고, 작물보험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농업법에서 작물보험 정책의 강화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및 WTO와 FTA로 인한 무역자유화 가속화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농가경영 위험성 증대와 소득변동성 증가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위험관리정책의 강화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농업법에서 고정직불 폐지 등으로 인한 농업계의 불만을 줄이면서 기존의 직접적인 농가 소득 및 가격지지 정책을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로 전환한다는 명목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작물보험에 대한 지원강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2014년 농업법의 품목별 지원정책과 작물보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미국은 주요 정책대상품목 생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 불확실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안정망 장치 수단으로써 전통적인 가격하락 대응 지원제도(마케팅론과 PLC) 유지와 함께 수입기준 직불(revenue based payments, ARC)과 작물보험정책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년 미 농업법의 특징 중 하나는 농가소득안정망 및 위험관리 강화측면에서 전통적인 보험상품 연계 경손보상정책(shallow loss policy)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경손보상정책이 출현한 배경은 무엇보다 재정능력이 취약한 농가의 경우 자연재해나 시장위험으로 인한 소득손실은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되지 못하는 농가손실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예컨대 작물보험의 보상범위가 일반적으로 70% 내외수준으로 만일 농가손실이 자기부담금(deductible)보다 적은 수준에서 발생하는 경우 농가는 이러한 손실을 기존의 작물보험을 통해 지원 받지 못하거나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더라도 손실의 30%정도는 농가가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자기부담금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일반적으로 경손(Shallow Loss)이라 말하며, 이렇게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되지 못하는 농가손실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경손보상정책의 개념을 반영하여 품목별 농가지원정책으로 신설된 수입손실보상제도(ARC)와 함께 전통적 작물보험 연계 상품인 면화소득보호계획(STAX)과 보완적보상옵션(SCO)제도가 탄생한 것이다<표 4 참조>.

한편 최근 미국에서 농업위험관리 수단으로 주요 정책대상 품목별 농가지원정책(Title I) 비해 작물보험(Title XI)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농업보험의 아래와 같은 특징과 강점에 기인한다. 첫째, 고정직불금(DP), 유통융자지원제도(ML), 가격보전직불

표 4 2014 미국 농업법의 경손보상정책 비교

구분	보험연계 경손보상 정책		보험비연계 경손보상정책	
유형	보완적보상옵션 (SCO)	면화소득보호계획 (STAX)	농장기준 수입손실보상 (Farm Level ARC)	지역기준 수입손실보상 (County Level ARC)
기준수입	지역(county) 평균 수입	지역(county) 평균 수입	농장(farm)평균수입	지역(county)평균수입
기준가격	작물보험가격	작물보험가격	최근 5개년 올림픽평균가격	최근 5개년 올림픽평균가격
기준단수	작물보험단수	작물보험단수	최근 5개년 올림픽평균단수	최근 5개년 올림픽평균단수
보상범위	작물보험보장수입~S CO기준수입의 86%	기준수입의 70%~90%	기준수입의 76%~86%	기준수입의 76%~86%
보상면적	전체식부면적	전체식부면적	기준 식부면적의 65%	기준 식부면적의 85%
보험료 국가보조	65%	8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없음
SCO 연계 가능 여부	-	SCO 보상과는 연계할 수 없음	SCO 보상과는 연계할 수 없음	SCO 보상과는 연계할 수 없음
지불상한	없음	없음	12만 5천 달러 이내	12만 5천 달러 이내
소득기준 자격요건	없음	없음	농가소득 90만 달러 미만	농가소득 90만 달러 미만

제(CCP), 가격손실보상(PLC)나 수입손실보상(ARC) 등 품목별 농가지원정책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품목과 지급기준에 따라 소득 및 가격을 지원해 주는 대책이다. 반면에 농업보험제도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여 자신의 농장 특성에 적합한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제도이다. 둘째, 농업보험은 품목별 농가 지원정책과 달리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제한이나 지급한도가 없으며, 농업보험을 용자를 위한 담보물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전업농 혹은 상업적 기업농들이 직면하는 막대한 경영손실에 대한 위험관리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전통적인 품목별 농가지원제도는 대상품목이 15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되고, 전국 평균 수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역별로 수량과 가격 차이가 큰 농산물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장치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에 농가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상범위를 선택하는 농업보험의 경우 대부분 작물이 대상이고, 개별농장 혹은 지역의 단수, 선물가격과 예측가격 등을 기준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위험관리 장치로서 유용하다는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가격손실보상제(PLC) 등 품목지원정책들은 WTO 농업협정의 감축대상보조(AMS)로 국제통상협상에서 항상 미국이 협상파트너로

부터 공격받는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보험제도의 경우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제규범에 의해 허용 가능한 위험관리 정책지원이므로 국제사회로부터 미국 농업보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줄이면서 국내농업보조금의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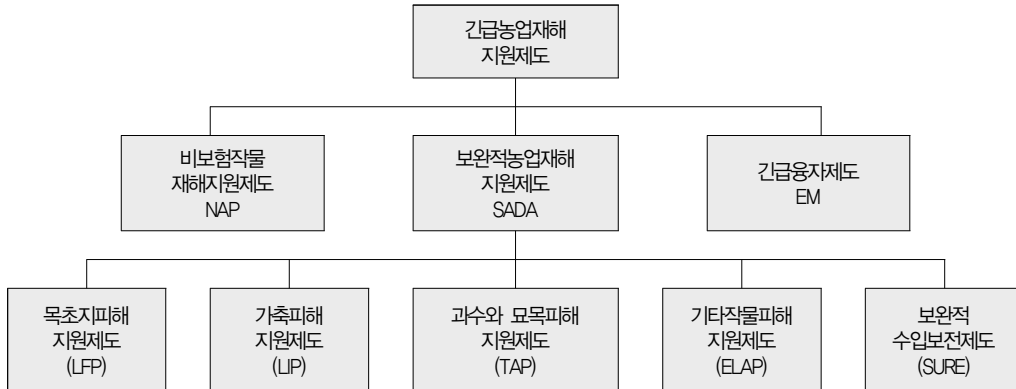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자국 내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 강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농정수단으로 농업보험제도의 확충과 이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농가의 경미한 손실은 품목별 지원정책인 수입손실보상(ARC) 혹은 가격손실보상(RLC)을 통해 지원하며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중손(deep loss)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일정부분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상범위를 선택하는 전통적 작물보험과 새롭게 신설된 보험 연계 상품인 면화소득보호계획(STAX)과 보완적보상옵션(SCO)제도를 통해 농가소득 안전망 및 경영위험 관리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4. 농업긴급재해지원제도(Disaster Payment Program)

미국은 자연재해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업보험과는 별도로 농업긴급재해지원(Disaster Paymen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한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동되는 주요 제도로는 농업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물의 긴급재해지원을 위한 비보험작물피해보전제도(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NAP), 보완적농업재해지원제도(Supplementary Agricultural Disaster Assistance, SADA), 그리고 긴급재해융자제도(Emergence Loan)가 있다<그림 3 참조>.

첫째, 비보험작물 재해지원제도(NAP)이다. 이 제도는 1996년 연방농업개혁법(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에 의해 승인된 항구적 제도로서 농업보험의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소득 및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작물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작물 중에서 상업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식용, 사료용, 섬유용 작물, 버섯, 상추, 화훼, 관상식물, 잔디, 수생식물, 인삼, 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농가가 이 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농가가 최소한의 행정비용(service fee)으로 작물당 250달러, 혹은 농가당 750 달러를 선택하여 지불하면 된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한 가입조건, 발동조건, 보전율은 기초보험인 CAT와 유사하나, CAT는 정부

그림 3 미국의 긴급농업재해 지원제도



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제도인데 비해 NAP는 보험 대상이 아닌 작물이 대재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는 구제 제도이다. 따라서 CAT는 보험을 관리하는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과 보험회사에서 담당하고 NAP는 품목별 정책지원 등 농가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농가지원청(Farm Service Agency)에서 관리한다. 이 제도는 2008년 농업법상 자연재해로 50% 이상의 생산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가격의 55% 지불율로 평균생산량의 50%까지 보상해주는 지원정책이다.

한편 2014년 농업법은 기존의 비보험작물지원제도(NAP)의 기본 골격을 승인하고, 여러 측면에서 NAP제도의 개선을 통해 농가지원조치를 강화하였다. 우선 2014년 농업법은 비보험작물지원제도(NAP)의 농가지원 강화차원에서 현행 평균생산량의 50% 보장수준을 65%까지 증가시키고, 지불율도 시장가격의 55%에서 100%로 상향 적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작물보험과 같이 농가가 보장수준(50%~65% 사이)과 지불율(55~100%)을 추가적으로 구입(Buy-up)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의 NAP 보다 높은 보장수준과 지불율을 선택한 농가는 보장한도(liability)의 5.25%에 해당하는 고정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2014년 농업법은 비보험작물지원제도(NAP) 수혜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면제대상을 기존의 자원빈약농가(limited resource farmer)이외에 창업농과 빈곤농가까지 확대하였으며, NAP을 통한 지불상한도 10만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비보험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긴급재해지원 강화조치는 심각한 농업재해로부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보완적농업재해지원 프로그램(SADA)이다. 이 제도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

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작동되던 특별농업재해지원대책을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2008년 농업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2011년 9월 30일까지 도입되었다. 2008년 농업법은 홍수, 가뭄, 가축질병 등 긴급재해, 기상이변, 환경조건 변화에 따른 긴급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과거와 달리 자동적으로 농가를 긴급지원해 주는 5가지 유형의 보완적 농업재해 지원 프로그램(SADA)을 도입하여 작물, 가축, 과수, 나무 등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망을 확충하였다. 2008년 농업법에 의해 시행되는 5가지 유형의 보완적 농업재해 지원 프로그램(SADA)은 다음과 같다. (i) 목초지가 가뭄으로 방목할 수 없게 되거나 건초가 화재로 멸실된 경우 월평균 사료비의 60%(가뭄)과 50%(화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Livestock Forage Disaster Program, LFP), (ii) 기후조건의 악화나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가축 사망률이 평상시 보다 높을 경우 시장가축가격의 75%를 보상해 주는 가축보상직불제(Livestock Indemnity Payments, LIP), (iii) 과수나 묘목이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새로 심는 비용의 70%, 제거비용의 5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Orchard and Nursery Tree Assistance Program, TAP), (iv) 가축, 꿀벌, 양식 물고기 등이 자연재해나 질병, 산불 등으로 사망한 경우, LFP와 LIP 등 다른 지원제도에 의해 보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연간 2천만불 이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프로그램(Emergency Assistance for Livestock(ELAP), Honey Bees, and Farm-Raised Fish), (v) 자연재해로 모든 정부지원금을 포함하더라도 농가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지원하는 보완적수입보전제도(Supplemental Revenue Assistance Payment, SURE).

한편 2014년 농업법은 보완적농업재해지원프로그램(SADA)을 영구지원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2008년 농업법에서 만들어졌던 보완적 농업재해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Agriculture Disaster Assistance, SADA) 아래 5개 재해지원 프로그램 중 작물 생산농가의 수입을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는 보완적수입지원직불제(SURE)를 제외한 4개의 프로그램을 재승인 하였다. SURE는 연방정부가 재해지역으로 선포한 군(County)이나 인접지역의 군(County)내의 생산농가로서 농장 수입손실이 평상적인 생산연도 대비 농장수입의 50%이상 발생한 농가에 대한 재해지원제도였으나 이번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2014년 농업법은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으로 농장수준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수입손실보상(ARC)제도에 이러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 이 제도 폐지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은 거의 없다. 또한 TAP제도 하에 과수나 묘목이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새로 심는 비용의 70%지원 수준을 65%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지원 상한을 10만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로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LFP, LIP, ELAP를 통한 농가지원 상한을 10만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로 증가시켰다. 또한 이러한 보완적 농업재해 지원 프로그램(SADA)의 수혜받기 위해 2008년 농업법상 요구되던 농가의 CAT 이상의 작물보험이나 비보험작물(NAP)지원제도 가입의무가 없어졌다.

셋째, 긴급재해응자제도(EL)이다. 이 제도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피해농가에게 생산시설 복구 및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에 대해 저리로 긴급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재해농가는 5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실제 생산 및 시설 피해액의 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혹은 인접 지역의 가족농으로, 30% 이상의 작물피해 혹은 가축, 축산물, 부동산 및 동산 등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

5. 평가와 시사점

미국은 오래전부터 농가경제의 안정성 확보와 농장경영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농업위험관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으며, 그 핵심적 수단으로 주요 기초농산물을 정책대상 품목으로 설정한 품목별 가격 및 소득지원제도, 농업보험제도, 그리고 긴급 농업재해지원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농가는 매년 영농 착수 전에 법률적으로 미리 정해진 주요 품목별 가격 및 소득 지원 수준을 미리 알 수 있어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한 동시에 사후적으로 극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면 농업보험, 그리고 보험대상 작물이 아닌 경우 비보험작물피해보전제도(NAP), 긴급재해응자제도(EL), 긴급농업재해지원제도(SADA) 등 농업재해지원제도를 통해 손실된 소득의 상당부분을 보전 받고 있다.

미국의 농업위험관리제도는 정부주도 관리제도와 농가주도 관리제도가 상호 보완하고 있다. ML, CCP, ACRE, PLC, ARC 등 품목별 지원제도는 정부주도의 위험관리 수단이고, 보험제도는 농가의 선택과 부담에 기초한 위험관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대재해에 대해서는 정부주도로 CAT, NAP, SADA 등에 의해 작물별 단수 위험 및 농가단위 경영위험을 관리한다. 정부주도의 품목별 지원은 가격하락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단수 위험관리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단수 위험관리 수단이었던 보험제도는 가격 위험관리까지를 포함하도록 발전하였다. 품목별 지원제도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미리 설정한 기준년도의 가격과 수입수준을 보장하는 데 그치는데 비해 보험제도는 농가의 선택과 부담으로 정부가 설정한 수준 이

상의 단수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농업법은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미국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 및 경영위험 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미국에서는 가뭄, 홍수, 과습, 우박, 바람, 서리 등 기상이변이나 병해충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가격하락 등 농업경영상 위험요인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농정의 핵심적 수단으로 농업보험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4년 농업법상 국민영양지원 프로그램의 뒤를 이어 많은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문은 작물보험에 대한 지출이며, 작물보험에 대한 재정지출은 4대 주요 농업정책 부문(국민영양, 농업보험, 품목별 농가지원, 환경보전) 중 유일하게 절대금액이 2008년 농업법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움직임, WTO와 FTA로 인한 무역자유화 가속화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농가경영 위험성 증대와 소득변동성 증가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장치의 강화 움직임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기존 농업법상 농가에 대한 대표적 지원정책인 고정직불제 폐지에 대한 농업계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농가경제 여건에서 기존의 직접적인 농가 소득 및 가격 지지 정책을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위험 관리 장치로 전환한다는 명목으로 작물보험에 대한 지원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농업법 개정에 따라 향후 미국 농가는 주요 정책 대상 품목에 대한 지원정책인 유통지원융자제도(ML), 가격손실지불제도(PLC), 그리고 수입손실보상지원제도(ARC)를 통해 지원받으면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중손(deep loss)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일정부분의 보험료를 부담하며 보상범위를 선택하는 작물보험과 함께 긴급농업재해지원대책을 통해 농가소득 안전망 및 경영위험 관리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없는 수입보장(ARC) 지원제도의 시행은 일부 개별 농가의 작물보험 가입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ARC가 원천적으로 가지는 한계인 보상기준으로서 식부면적 제한, 소득기준충족 및 지급상한이라는 제약, 농장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기준 단수 및 가격의 설정 등을 감안할 때, 농가 입장에서 작물보험이 가지는 장점이 많아 이러한 부작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에 어느 국가에서나 농업위험관리(farm risk management)를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국가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병해충, 가

축질병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농가의 소득 및 경영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물결 속에 농가소득 안정망 장치가 미흡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도 보다 확충된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위험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농업생산의 불확실성 및 시장위험으로부터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수입보장 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긴급재해에 대비한 농업지원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의 농업위험관리 정책은 농가 스스로 적극적인 위험회피 행동과 위험회피를 위한 적절한 시장도구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이 되도록 정책 간 상충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주요 품목의 가격하락 및 수입손실 대응 지원, 농업보험, 긴급농업재해지원의 조화로운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농업위험관리 정책수단별 주요 정책 수혜대상 농민을 차별화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설계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농업직불제도는 보다 장기적이고 평균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요 정책대상 품목에 한해 수혜자격과 지급한도를 정해 지원되는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대표적 평균 중소규모 농가의 연도별 수입을 안정화 시키고자하는 대책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농업보험 제도는 농업직불정책과 달리 농가소득에 따른 가입제한이나 지급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화된 전업농 혹은 매출액이 큰 상업적 기업농들이 직면하는 위험관리 장치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즉 농가 스스로 일정부분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상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농업보험은 최근의 품목별 농장단수 및 변화하는 가격 상황을 기준으로 발동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개별 농장특성에 보다 적합한 위험관리 장치로 매출규모가 큰 전업농이나 기업농들의 농가위험관리 장치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경우 현재 농가위험관리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농업재해보험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농업보험대상 품목은 직불제의 수혜를 받는 정책대상 품목(15개)을 포함하여 120개 이상이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어떠한 형태든 농업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업직불제나 농업보험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심각한 재해로 인한 농가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재해지원제도(Disaster Payment)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과 같이 홍수, 가뭄, 가축질병 등 긴급재해, 기상이변, 환경조건 변화에 따른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업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물을 위한 비보험작물 재해지원(Noninsured Assistance Program, NAP), 재해농가에 피해복구 및 경영자금을 융자지원 하는 긴급재해융자(Emergency Loans, EL), 그리고 2008년 농업법에 의해 만들어진 보완적 농업재해 지원 프로그램

(Supplemental Agriculture Disaster Assistance, SADA) 등과 같이 농가의 긴급재해발생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임정빈. 2014. “2014년 미국 농업법의 배경과 개요”. 세계농업 Vol.16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빈. 2014. “2014년 미국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세계농업 Vol.1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Chite R.M.(coordinator). 2014. The 2014 Farm Bill(P.L. 113-79): The 2014 Farm Bill: Summary and Side-by-Sid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3076. Washington D.C.
- Chite R.M.(coordinator). 2014. The 2014 Farm Bill: A Comparison of the Conference Agreement with the Senate Passed Bill(S. 954) and House Reported Bill(H.R. 264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3076. Washington D.C.
- Dennis A. Shields and Randy Schnepf. 2012. Farm Safety Net Provisions in a 2012 Farm Bill: S. 3240 and H.R. 608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2759. Washington D.C.
- Emily J. Goff. 2012. Shallow Loss: The 2012 Farm Bill's New Subsidy Program. Heritage Foundation. Issue Brief. No. 3662.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Farm Program Atlas.
(www.ers.usda.gov/Data/FarmProgramAtlas/Atlas.html).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08 Farm Bill Side by Side.
(<http://www.ers.usda.gov/FarmBill/2008/~>).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14, Agricultural Act of 2014: Highlights and Implication, Crop Insurance.
- USDA. Farm Service Agency. 2014 Farm Bill: FACT SHEET.
- USDA. Risk Management Agency. Summary of Business Report for 2000-2014.